##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80

발의연월일: 2021. 10. 19.

발 의 자 : 윤재옥 • 박수영 • 윤두현

윤주경 · 김희곤 · 정희용

박덕흠 • 구자근 • 김은혜

박성중 • 유의동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-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 추석 및 2021년 설 명절에 한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.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0년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% 증가했으며, 특히 10~20만원대 선물 매출이 10%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. 또한, 2021년 설 명절 기간에도 농수산물 선물의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.3%가 증가한 바 있음.

그러나, 2021년 추석 기간에는 권익위가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지 않아 코로나-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바 있음.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·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

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설날 전 30일부터 설날 후 7일까지와 추석 전 30일부터 추석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.

- 가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
- 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 품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	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	③
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	
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	
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	
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	2
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	
로 제공되는 음식물・경조사	
비・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	
금품등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설날 전 30일부터</u>
	설날 후 7일까지와 추석 전
	30일부터 추석 후 7일까지의
	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선물
	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
	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
	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
	로 정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가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

	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
	<u>농수산물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</u>
	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
	<u>농</u> 수산가공품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